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분기별로  
정리해서 *Brief*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II. 주요 규제 동향

III. 국내외 뉴스

IV. FAQ

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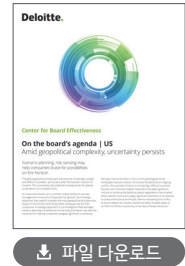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5월판

## 》 지정학적 복잡성 속에서 지속되는 불확실성

- ▶ 기업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운영, 성장, 전략 목표에 대한 감독 책임을 이행할 때 목표와 관련된 지정학적 경제적 이슈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시나리오 플래닝과 고급 리스크 감지 기술을 활용하는 리스크 인텔리전스 와 관련한 전략적인 접근 체계는 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해지고 있음
- ▶ 목 차
  -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시나리오 플래닝 및 리스크 감지 기술 활용
  - 글로벌 경제에 작용하는 지정학적 힘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
  - 이사회에서 고려할 질문



2022년 1분기 / 딜로이트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컬럼비아 법학전문 대학원

## 》 이사회 업무 시간 배분 및 우선순위

- ▶ 이사회 및 이사회 멤버가 업무 수행 우선순위를 변경할 때 해당 변화가 업무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개관함
- ▶ 본 원고의 저자들은 이사회가 수행할 업무 시간 배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이사회 주요 감독 분야인 재무성과, 전략, 인재 확보 및 거버넌스 중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 목 차
  - 평상시 이사회 역할
  - 위기상황 발생 시 이사회 역할
  - 이사회 업무 우선순위의 변화 흐름
  - 시나리오 별 대응 방향
  - 결론
  - 딜로이트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 소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3월판

## 》》 메타버스와 관련해 넘쳐나는 담론

- ▶ 메타버스는 하이테크 업계에서 화두로 떠올랐고 많은 고객과 기업 브랜드가 예의주시 중이며, 주요 기업들은 네트워킹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메타버스에 대규모로 투자중임
  - ▶ 기술의 발전은 연결성을 향상시켰고 최근까지도 불가능했던 의사소통과 몰입경험을 가능케 함
  -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현실과 유사한 극사실적이며 정밀한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음
    - 인간, 로봇 및 지능형 에이전트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협력을 통해 계획 설계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음
- \* 디지털트윈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

### ▶ 목차 :

- 디지털 기술 진화의 다음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이 더욱 가상화될 것으로 예상
- 비즈니스에서 메타버스가 떠오르고 있다고요?
-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사회의 역할
- 웹 3.0과 메타버스
- 이사회에서 고려할 질문



파일 다운로드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4월판

## 》》 미래의 영역에서 전통 영역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

- ▶ 디지털 자산이 전체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금융생태계 내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했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분산원장(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인 블록체인 또한 상당한 세력을 얻어 기업들에게 사업의 방향성을 혁신할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 ▶ 딜로이트의 2021년 글로벌 블록체인 서베이에 의하면 응답자의 76%는 디지털 자산이 향후 5~10년 내에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강력한 화폐대용 지급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
- ▶ 이사회는 기업 전략 검토 및 리스크 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기업이 직면한 기회 및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역동적이며 새로운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 목차 :

-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하는 새로운 방식이 전통적인 상거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 크립토(Crypto, 암호)의 무궁무진한 기회
- 고려 대상인 리스크 요소들
- 이사회가 고려할 질문



파일 다운로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1월판

## >> 2022년 이사회 아젠다

- ▶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경영진에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배제하고 사업성과만을 고집하며 전통적인 성과지표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해야 함
  - 이사회는 전략 및 리스크 등 기업의 본질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회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추가적인 이슈에도 주목해야 할 것임

### ▶ 목차:

-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 기업 및 이사회 역할
-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 다루기
- 웰니스\* 및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역점
- 기술에서의 리스크 및 기회
- 기본으로 되돌아가기
- 이사회 효과성은 그 자체로서의 안전인가?
- 유일한 항수(恒數) - 변화와 이사회 적응성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으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다 심화시켜 광범위한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건강관



파일 다운로드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2월판

## >> 기술에 능통한 이사진 : 혁신을 위한 공통 언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 오늘날 기업과 이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리스크와 기회는 기술 중심 콘텐츠로 구성됨
  - 기술은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완화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 2021년 설문결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10% 이상 증가하였음
- ▶ 이사회와 추천위원회 및 지배구조위원회는 향후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인물을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할지와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지 고려중임

### ▶ 목차:

- 기술 및 이사회 구성
- 2021년 딜로이트 컨설팅 LLP 연구 결과
  - 기술 능통성에 대한 조건
  - 중요한 발견사항
  - 추가적인 발견사항
  - 기술 재구상 및 전략 조정
  - 코로나19의 영향
- 앞으로 다가올 미래
-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파일 다운로드

# II. 주요 규제 동향

2022.6.24.(금) 금융감독원

## >> 2023년도 상장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

### ▶ 취지:

-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 사항 및 업종을 선정 후 사전 예고



📄 파일 다운로드

### 1. 수익인식

구분	내용
선정배경	• 新 수익기준('18년도 시행) 후 상당 기간 경과에도 거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
대상업종	비제조업 (건설업 제외)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유의사항	•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 주석 요구사항 충실히 기재

###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구분	내용
선정배경	• 빈번한 임직원 횡령 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
대상업종	전 업종
선정기준	자산규모 및 상장 주식시장 등 감안해 표본추출방식 사용
유의사항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 점검 및 잔액 검증 절차 통해 실재성을 확인 • 사업 특성 고려해 현금흐름정보 구분 표시 및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히 주석 공시

###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구분	내용
선정배경	• 영업활동 관련(매출채권, 미수금 등) 손상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 유인 존재 •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 필요
대상업종	• 제조업(의약품, 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원자재 사용 비중 또는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점검)
선정기준	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및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
유의사항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히 인식 및 관련 정보 충실히 주석 공시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

## II. 주요 규제 동향

### 4. 사업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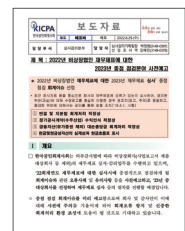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선정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결합의 증가 추세와 그 방법 또한 다양하며 복잡</li> <li>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필요</li> </ul>
대상업종	전 업종
선정기준	사업결합 여부 및 거래규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자산 및 인수부채 사업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 적용하여 공정가치 인식</li> <li>사업결합 내용 및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주석 공시</li> </ul>

2022.6.29.(수) 한국공인회계사회

## >>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분야

### ▶ 취지:

- '2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
- '23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파일 다운로드

### ▶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그에 대한 유의사항:

#### ①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전 규정에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②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

#### ③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 금융자산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를 파악하고 손상사건 발생 여부를 검토

####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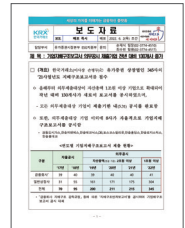
-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007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히 기재

## II. 주요 규제 동향

2022.6.2.(목) 한국거래소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제출기업 전년 대비 130개사 증가

- ▶유가증권 상장법인 345사가 '21사업연도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
- ▶올해부터 의무제출대상인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어 작년 대비 130개사가 새로이 보고서를 공시 (아래 표 참조)
- ▶의무공시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곳도 8곳에 달함
-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기업이 전년 대비 60% 증가
- ▶'24년부터는 자산총계 5천억원 이상 기업, '26년부터는 쉐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대한 의무가 확대될 예정
- ▶3월 개정된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기재누락 및 오기재 여부 등 면밀히 살피고 충실히 공시 기재한 상장사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시상할 예정
-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ESG경영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공시보고서 전수점검 실시 후 기준에 미흡한 건에 대해 정정공시 요구 등을 통해 기재 충실도를 제고



↓ 파일 다운로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제출기업

구분	자율공시		의무공시			
			자산총액(연결 기준)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17	'18	'19	'20	'21	'22
금융회사	39	40	39	40	40	41
일반상장사	31	55	161	171	175	304
전체	70	95	200	211	215	345



## II. 주요 규제 동향

2022.6.28(화) 금융감독원

###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 ▶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공개하여 왔음
- ▶ 현재까지 총 123건의 지적사례를 공개 ('11~'21)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공개 시기	'19. 12월	'20. 8월	'21. 6월	'21. 12월	'22. 6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18~ '19	'15 ~ '17	'20	'11~ '14	'21	'11~ '21
공개사례 수	29	37	15	27	15	123
1. 매출 수익인식	4	12	5	4	4	29
2. 지분 금융상품	4	6	5	4	3	22
3. 재고자산	3	1	-	-	1	5
4. 유 무형자산	4	4	1	-	2	11
5. 기타자산 부채	7	5	2	8	2	24
6. 주식미거래	2	3	1	4	1	11
7. 기타	5	6	1	7	2	21



- ▶ 금년도 지적사례에는 매출 허위 과대계상, 투자주식 파생상품 평가오류, 재고자산 및 유 무형자산 과대(허위)계상 등이 발견되었으며, 매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DB를 축적해 나갈 예정

#### 주요 감리지적사례

##### ▶ 매출·매출원가

-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해당 IT업계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
- B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을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

##### ▶ 무형자산

- C사는 A사와의 사업결합 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A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비용은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

##### ▶ 파생상품자산 부채

- D사는 복합투자상품(CB 및 BW)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해당 복합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파생상품자산 부채 및 관련 평가손익을 누락

## II. 주요 규제 동향

2021.11 고용노동부 / 2021.12.31(금) 환경부

###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 중대시민재해란?

-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제조상의 결함/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

▶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

#### ▶ 중대시민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 수사를 통해 의무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과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파일 다운로드



↓ 파일 다운로드

구분	대상	내용
책임주체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적용범위	50명 이상의 사업 혹은*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개인사업자 및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사업 또는 '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음		

# III. 국내외 뉴스



## 기업지배구조

-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 핵심지표 준수율 낮아 [이데일리]
- HSBC, 지속가능한 금융을 목표로 ESG 개척하는 유럽 최대 은행 [한스경제]
- “기업 명운 좌우”...삼성전기 ESG 조직 다양하게 꾸렸다 [뉴스웨이]
- 녹십자, 공익활동·연구개발 우수...지배구조 부문 아쉬워 [뉴스웨이]
- Activist investor group asks SEC to investigate Tesla over plan to shrink board [CNBC]
- Dell Technologies' FY22 ESG Report In Three Words: Data,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bes]



## 이사회·감사위원회

-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두 갖춘 슈퍼 사외이사(Super Director) [더벨]
- 국민 기대 수준 반영, 신뢰 받는 공기업 '걸음마' [더벨]
- 대우조선, ESG위원회 신설...신임 위원장 최경규 사외이사 [머니투데이]
- 고려 물락과 서정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외이사 고집 [시사오늘]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ESG 선도...“지속가능한 CDMO 도약” [팜이데일리]
- Boards And The Art Of Disclosure [Forbes]
- What it's like building a board of directors for a successful tech company [FastCompany]



## 회계투명성

- 연이은 횡령 사건에...공인회계사회 회장 “기업들 당장 내부점검 해야” [동아일보]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추락, 이유는 오스템·우리은행 횡령 탓? [조선비즈]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추락...기업 횡령 또 회계사 '탓' [조세금융신문]
- [2022 가상자산 세미나] 이준행 “라이선스 거래소 중심으로 투명성 높여야” [뉴스핌]
- 50 Years of Integrity at the 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Barron'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출범 [파이낸셜뉴스]
- 인수합병 시장 침체 속...딜로이트안진·삼정KPMG도 추격 가속 [더벨]
- Deloitte Wins 2022 'Digital Innovation of the Year' for its Omnia ESG Module at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Forum and Awards [Cision PR Newswire]

# III. 국내외 뉴스



## 부정행위방지

- 우리은행, 대규모 조직 개편… “내부 통제 강화” [한경닷컴]
  - “빼돌렸다하면 ‘억’ 대급” …돈 만지다 횡령 사고 내는 금융권 [매일경제]
  - ‘한 달에만 세 번’ 횡령 사고에 “농협 구조조정 필요” [뉴스월]
  - [특파원 리포트] 美 연방 검사, JP모간체이스(JPM) 귀금속부 전 임직원 시장 교란 혐의로 기소 [인포스탁데일리]
  - Credit Suisse money laundering verdict start of new era of Swiss enforcement? [ComplianceWeek]
  - Compliance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Once Separate, Now Becoming Inextricably Linked [CorporateComplianceInsights]
- 



## 규제 동향

- 가상자산거래소 고삐 조이는 금감원, 내부통제 협의회 신설 [더벨]
  - “무늬만 ESG”로 이익만 얻는 ‘그린워싱’ 방지 규제 만들어야 [연합뉴스]
  - “최대주주 자주 바뀌는 상장사, 투자위험 크다” [조세일보]
  - [예규·판례] 대법 “BW 발행 뒤 실제 인수대금 안 내면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 [조세금융신문]
  - “M&A 문턱 확 낮춘다”...공정위, 기업결합 개선TF 구성 [머니투데이]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대시민재해란? [데일리환경]
  - FASB adds three new projects to technical agenda [Journal of Accountancy]
- 



##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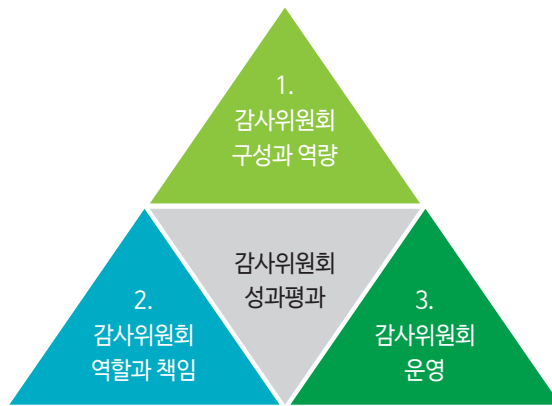
- [김화진칼럼] M&A와 이사회 역할 [더벨]
- 세계 경기 둔화에 M&A 찬바람…투자은행도 거액 손실 가능성 [매일경제]
- M&A ‘풍년’ PEF 존재감 되찾았다 [더벨]
- [2022 상반기 산업 키워드10] M&A만이 살길? …새 먹거리 찾는 대기업들 [한스경영]
- 2Q 제약 M&A 회생 조짐 [의학신문]
- 전문성+외연 확장…전문물, M&A로 ‘몸집 키우기’ [한겨레]
- Three Major Trends in Credit Union Mergers and Acquisitions [TheFinancialBrand]

# IV. FAQ

## 1. 연말·연초 감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참고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감사위원회 성과평가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
- ▶ 감사위원들이 자가평가(Self-assessment)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피드백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딜로이트 감사위원회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출처 : 딜로이트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1. 감사위원회 구성과 역량	Check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감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감사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충족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 (재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 등)	
• 산업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배경(학력, 출신지 등)을 갖추고 있음	
• 지속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련된 회계나 재무보고, 규제, 감사 및 산업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임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함	
• 매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	
• 신임 감사위원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회사, 감사위원으로서의 책임 및 회사의 재무보고와 회계처리정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 감사위원장은 모든 감사위원들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음	
• 추천위원회(또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조직)와 협력하여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의 승계계획 및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IV. FAQ

<p>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외부감사</p>	<p>Che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서면진술(Representation letter)을 검토하고,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에 관한 기준을 수립함. 외부감사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비감사용역 건 별로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또는 협의절차를 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회계자문, 조세 전략서비스 등)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 담당파트너가 관련 법규에 따라 교체되었는지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이슈를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 별도의 독립적인 회의를 개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업무의 적절성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회계법인 내부의 품질관리절차에 선정되었는지를 질문하고, 선정되었다면 관련 지적사항과 향후 감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함</li> </ul>	
<p>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내부감사</p>	<p>Che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이 상호간에 협조한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각각에 대한 기대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규모와 복잡성,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내부감사 규정, 감사계획, 예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내부감사 담당 직원의 수와 자질 및 연속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책임자(CAE; Chief Audit Executive)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이들의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한 후 이사회와 경영진에 최소 연 1회의 피드백을 제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하여, 내부감사가 감사위원회에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라인을 구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 및 개선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함</li> </ul>	
<p>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p>	<p>Che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이 조직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정책과 방침을 이해하고 승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이 직면한 부정위험과 경영진이 수행한 부정위험 평가결과를 이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이 감사위원회 또는 전체 이사회에 제공한 정보를 통해 회사의 성과를 유관기업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리스크 감독기능을 경영진이 회사의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통제, 운영통제, 법규준수통제를 포함)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절한 준거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롯한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는지 확인함</li> </ul>	

## IV. FAQ

<p>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계속)</p>	<p>Che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준법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 또는 준법감시인)로부터 법규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의 위반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통지나 회사의 답신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프로세스를 감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 및 행동규범이 이행되는 과정을 감독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부패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절차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익명성 보장, 보복 금지 등)를 포함, 헬프라인 등 윤리, 부정 및 준법과 관련한 신고시스템을 감독하고, 잠재적인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신고 내역을 검토함</li> </ul>	
<p>3. 감사위원회 운영</p>	<p>Che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와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표시한 일정표를 작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하거나 새로이 등장하는 이슈에 충분한 시간을 배분하는 등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의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각 감사위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감사위원 간의 추가 논의가 가능할 정도의 회의시간을 확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의제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이나 이사회 구성원, 내부감사, 외부감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요청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회계 및 재무부문의 주요 경영자에 대한 기대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체 이사회에 이들의 역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FO의 승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회의 주제 및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감사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및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주기(최소 분기 1회)로 개최되며, 회의에는 주기적으로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으로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 별도의 회의를 개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위원회와 함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지급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공시절차와 관련된 책임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경영진, 기타 이사회 구성원 등이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행계획과 함께 이사회에 보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충분한 자원을 제공함</li> </ul>	

## IV. FAQ

### 2. 분·반기보고서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수령 후 기한 내 공시를 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는 감사보고서 수령 후 1일 이내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반기보고서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외부 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

▶ 분기보고서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제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외부 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는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 의무가 부과됨

- 해당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 한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반기검토보고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1))



## IV. FAQ

###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과 관련하여 3분기 중 실시할 점검사항은 무엇입니까?

감사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고 감사의 진행 사항 및 주요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통하여 추가 조치를 취함<sup>1</sup>

3분기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사항 보고 및 핵심감사 항목 수령/검토 (반기 검토 결과 및 내부회계 설계 평가 결과 포함)

#### ▶ 8-9월 중 중간평가의 수행이 권고됨

- 반기평가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정기평가를 보조하는 중간점검에 준하는 개념으로 활용 가능하고,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이 아닌 일부에 관한 심층적인 점검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임
- 중간평가 지연 또는 미흡으로 인해 미비점 치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식별된 미비점의 개선, 결과 취합 및 최종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간평가수행의 필요가 있음

####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핵심감사사항 선정 결과를 8-9월 중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

- 개선을 위해서는 상반기 이슈를 포함하여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부서로부터 3분기에 의견을 보고받는 것이 권고됨
- 보고내용은 감사이슈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어려움,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 사례 2. 설계·운영 적용사례 [사례2]

## V. 주요 행사

###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2년 제3회 정기 포럼』

▶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링크 공지 예정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9월 14일 오전 7:30 ~ 9:30 (조찬 제공)		
장소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 (6F)		
참가대상	감사 및 감사위원님, 사외이사님 참석을 우선순위로 접수		
프로그램	사회 : 김한석 (사)감사위원회포럼 이사		
	시간	내용	Speaker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조찬	
	8:00 ~ 8:10	환영사	
	8:10 ~ 8:45	주제1.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백인규 한국딜로이트 그룹 ESG센터장 및 이사회 의장
	8:45 ~ 8:55	Break time	
8:55 ~ 9:30	주제2. ESG 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Investor Roundtable』 -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 신청하기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9월 22일 12: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genia Unanyants-Jackson (PGIM, 글로벌 ESG 리더)</li> <li>Séverine Neervoort (노르웨이은행투자운영회(NBIM), ESG 정책 자문 리더)</li> <li>Catherine Winner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글로벌 스투어드십 리더)</li> </ul>
사회자	Stephen Cahill (부의장 및 Executive Compensation Practice 리더, 딜로이트 UK)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의 핵심 기관 투자자 투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주목하는 새로운 주제 뿐만 아니라 중점적인 분야를 강조</li> <li>금년도 연례 주주총회 시즌 이후 의견을 공유할 글로벌 기관투자자 패널들이 함께할 예정</li> </ul>

### » 『상장회사 감사를 위한 특별조찬강연』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신청하기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8월 25일 오전 7:30 ~ 9:00 (조찬 제공)
장소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LL층)
참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소속 감사 등 감사업무담당 임원</li> <li>상장회사감사회 회원</li> </ul>
주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과 기업의 대응
강사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V. 주요 행사

## Upcoming events

### 『Company Challenges in a Fragmenting World』 -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신청하기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0월 21일 12: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ushik Chatterjee (Executive Director, Chief Financial Officer(CFO), 타타스틸)</li> <li>• 외 저명한 이사회 멤버</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데믹 이후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지난 2년 동안 갈라졌던 틈은 선명해지고 있음</li> <li>•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질문을 제시할 예정</li> <li>• 파편화된 지정학적 지형에 어떻게 직면할지</li> <li>• 공급망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li> <li>• 기후/지속가능성 계획이 점점 더 단편화되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보장할지</li> </ul>

### 『ESG & Trust』 -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신청하기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16일 1: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참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및 기후 관련 전문가</li> </ul>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 규제기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기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고하는 것에 집중되는 가운데 기업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li> <li>• 조직이 고객, 주주, 직원과 여론의 신뢰를 강화하며 조직의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li> <li>• 주요 이사회가 이사회에서 유의미한 ESG 아젠다 수립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li> <li>• 신뢰 구축 및 유지 방법에 대해 배운 교훈 검토</li> <li>• 최근 ESG 및 신뢰에 대한 Frontier 서베이 결과 또한 살펴볼 예정</li> </ul>

# Contacts



##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Tel : +82 2 6676 1545  
E-mail : 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Tel : +82 2 6676 1033  
E-mail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Tel : +82 2 6676 2940  
E-mail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Tel : +82 2 6676 1674  
E-mail : junoh@deloitte.com



## 황현지 사원

Staff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 +82 2 6138 6815  
E-mail : hyunjihwan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